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區의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전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게시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상업성 광고, 욕설, 음란물등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제9조~제12조)
- 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주민참여마당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4조)

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6조)

사.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등의 제공을 위하여 국외에도 구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도 병행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7조)

아.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자료 보안관리 및 시스템의 안전대책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요령등을 규정함. (안 제18조~제20조)

3. 관련법령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정의)

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정의) 및 제4조(민원의 신청등),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등)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관내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개인정보보호등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제정하였으나
-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중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하며” 는 “수시로 점검, 변경하여야 하며” 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13조제2항 내용중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되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제2항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를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로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2002. 5.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